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8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이용우 · 정준호 · 김남근
김기표 · 박 정 · 김태선
신장식 · 박홍배 · 강득구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환경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단순 행정구역 기준으로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에 ‘전력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전력계통 효율성·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항·제3항 신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력자급률”이란 해당 지역의 총 전력소비량을 그 지역에서 발전된 전력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시 지역별 전력자급률, 전력계통 효율성, 송전손실률, 발전·송전설비 입지 및 환경·사회적 부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전력자급률”이란 해당 지역의 총 전력소비량을 그 지역에서 발전된 전력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u>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생 략) <u><신 설></u>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① (현행과 같음)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시 지역별 전력자급률, 전력계통 효율성, 송전손실률, 발전·송전설비 입지 및 환경·사회적 부담,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